

표지면지

연구진

이종광 | 선임연구위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2

2022 통계보고서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등록 |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발행 | 2022년 11월 발행
발행인 | 유일한
발행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 979-11-6149-488-3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서론 및 II.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전문건설업체의 2021년도 계약금액(105.5조 원) 중 하도급 비중이 68.3%(72.1조 원)로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원·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음. 원·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하도급업체의 생존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경제적·사회적 과제로서 원·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청산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021년도 건설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7,437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31부(조사대상의 8.6%)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4.67임.
 -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표 I-2〉 참고).
 -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표 I-3〉 참고), 체감도 점수를 산정함(〈표 I-4〉 참고).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업계 관계자, 전문건설협회 담당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음.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원도급업체가 법령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III.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평균점수는 68.8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1년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에 비해 3.7점 하락하였음(〈표 III-1〉 참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원도급업체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39개 항목 중 36개 항목의 점수가 하락한데 영향을 받았음(〈표 III-2〉 참고).

- 8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음(〈표 III-3〉 참고).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감액(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의 순서.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하위. 체감도 점수는 2021년(66.1점)에 비해 2022년(63.9점)에 2.2점 낮아졌음.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2021년 6순위에서 7순위로 하락. 체감도 점수는 2021년(69.3점)에 비해 2022년(64.4점)에 4.9점 낮아졌음.
 -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한 감액(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4가지 범주는 68.8점 이상에 해당하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 등 4가지 범주는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간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결정(8개 항목 중 8개),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4개),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 및 부당특약(10개 항목 중 10개) 범주에 속하는 25개 항목 모두 61점 이상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1점 이상 80점 이하 항목은 12개 인데 부당한 위탁취소(2개 항목 중 2개), 부당감액(7개 항목 중 6개), 부당반품(4개 항목 중 4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다수임. 60점 이하 항목은 없음.〈표 III-13〉 참고
- 39개 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5가지 항목을 배열한 Bottom 5 분석에서는 부당특약 항목 2개,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2개 하도급대금 조정 항목 1개가 포함되었음(항목 상세는 〈표 III-16〉 참고). Top 5 분석에서는 부당반품 항목 4개, 부당감액 항목 1개가 포함되었음(항목 상세는 〈표 III-15〉 참고).

IV. 종합

- 2022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범주의 모든 항목이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는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현장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하위에 위치함.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도급계약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

목 차

2022 통계보고서

제1장 | 서 론 / 1

- 1. 조사배경 및 목적 3
- 2. 조사개요 4

제2장 |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7

제3장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17

- 1. 체감도 평균점수 19
-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21
- 3. 구간분석 28
- 4. Top 5 및 Bottom 5 분석 29

제4장 | 종합 / 33

참고문헌 / 38

부록 / 39

표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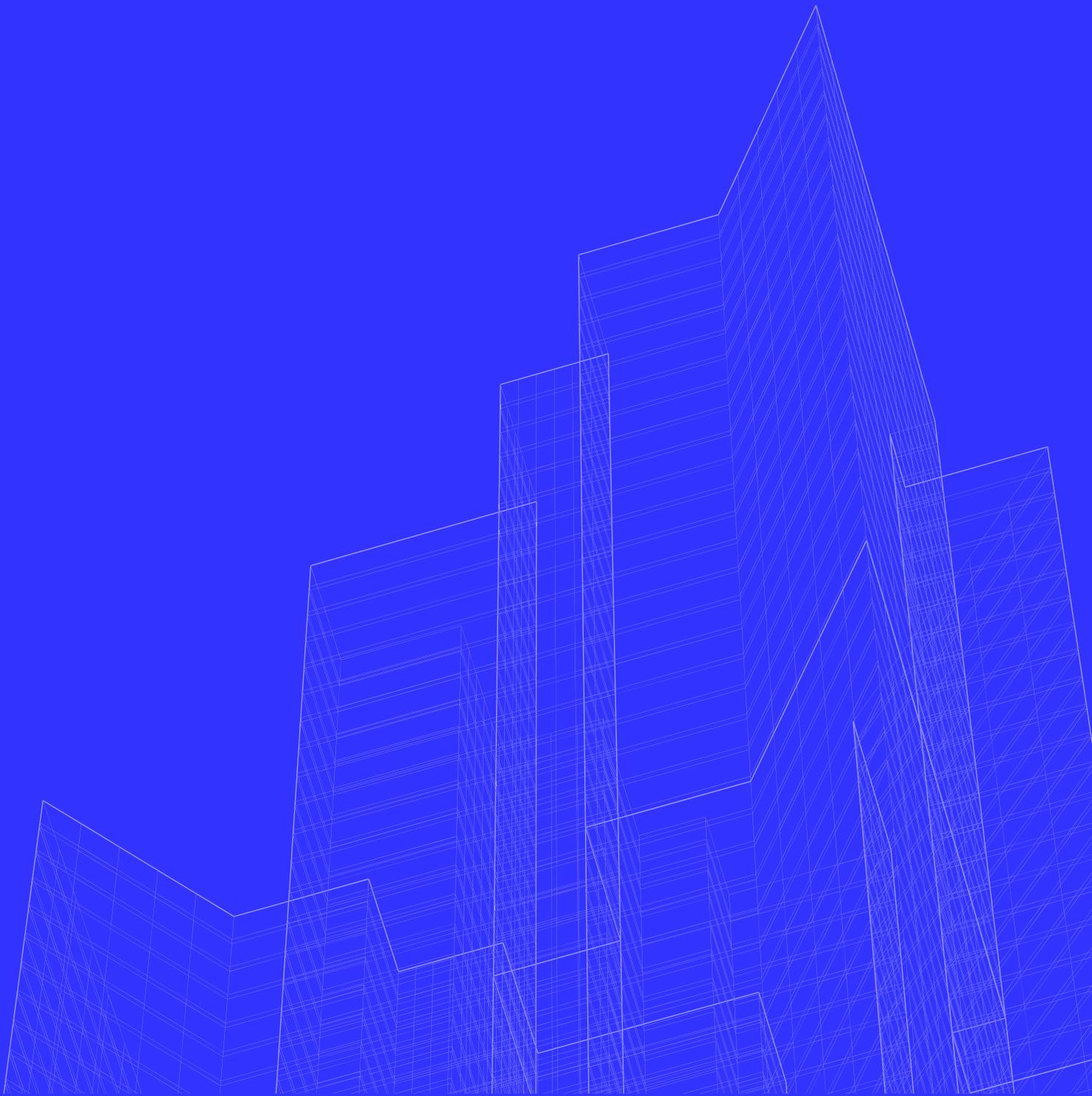
2022 통계보고서

〈표 I-1〉 조사대상 범주 및 항목	4
〈표 I-2〉 조사대상 항목 상세	5
〈표 I-3〉 단계별 배점	6
〈표 I-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방식	6
〈표 III-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19
〈표 III-2〉 항목별 체감도 점수	20
〈표 III-3〉 범주별 체감도 점수	21
〈표 III-4〉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2
〈표 III-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3
〈표 III-6〉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3
〈표 III-7〉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4
〈표 III-8〉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4
〈표 III-9〉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5
〈표 III-10〉 하도급대금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26
〈표 III-11〉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26
〈표 III-12〉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27
〈표 III-13〉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28
〈표 III-14〉 항목별 체감도 점수 순서	29
〈표 III-15〉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31
〈표 III-16〉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32

I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개요



제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체들의 2021년 기준 전체 계약금액(105조 5천억 원) 중 하도급 계약금액(72조 1천억 원)이 68.3%를 차지하여 원도급 계약금액(33조 4천억 원, 31.7%)과 비교할 때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음(전문건설협회 잠정분석 자료).
 - 건설생산은 다양한 생산요소, 기술, 인력의 결합을 이용하는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건설업체는 매번 수주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량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공사마다 새로운 생산조직을 구성하여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방식과 생산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체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다시 도급하여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거래가 일반적인 방식임.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원도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구분함.

- 다수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인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구조에서, 원·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측 기업 소속 구성원간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불공정거래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 윤석열 정부도 중소기업 중심, 공정거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기업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원·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큰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청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본 조사는 2021년도 건설하도급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8개 범주 39개 항목에 걸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인지하는 공정거래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건설하도급의 공정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개요

□ 조사기업

- 전문건설업체 중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17,437개사(2022년 5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조사를 진행하였음.
-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31부를¹⁾ 회수하여 분석하였음(표본 5,000개 중 8.6%에 해당함)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4.67임.

□ 체감도 조사

- 8개 범주(〈표 I-1〉 참고)에 속하는 39개 항목(〈표 I-2〉 참고)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표 I-1〉 조사대상 범주 및 항목

분 야	범 주	항 목
부당특약	부당특약	10
3배 손해배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부당한 위탁취소	2
	부당감액	7
	부당반품	4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	4
	하도급대금 조정	3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 금지	1

- 설문지 전체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 2021년도 1년 간 발생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함.
- 설문업체 선정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의 지원을 받았으며,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 조사대상 39개 항목의 상세내용은 〈표 I-2〉와 같음.

1) 회수된 설문지 431부는 지역별로 서울 88부, 부산 31부, 대구 20부, 인천 23부, 광주 21부, 대전 19부, 울산 13부, 경기 31부, 강원 17부, 충북 25부, 충남 7부, 전북 11부, 전남 48부, 경북 22부, 경남 44부, 제주 11부가 취합되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 전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수화 하는데 있어서는 업종별 기준 등 다른 변수를 구분할 의미는 없다고 보아 별도의 변수로 삼지 않았다. 전문건설업종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할 경우 요구되는 표본의 규모가 늘어나 조사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표 1-2〉 조사대상 항목 상세

범주	항 목
1. 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4. 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5. 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6. 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응답자가 선택하게 함.
- 공정거래 체감 단계별로 <표 I-3>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함.

<표 I-3> 단계별 배점

단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배점	100	75	50	25	0

- <표 I-4>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별 응답을 대응하는 점수로 전환하여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전체 응답수로 나눈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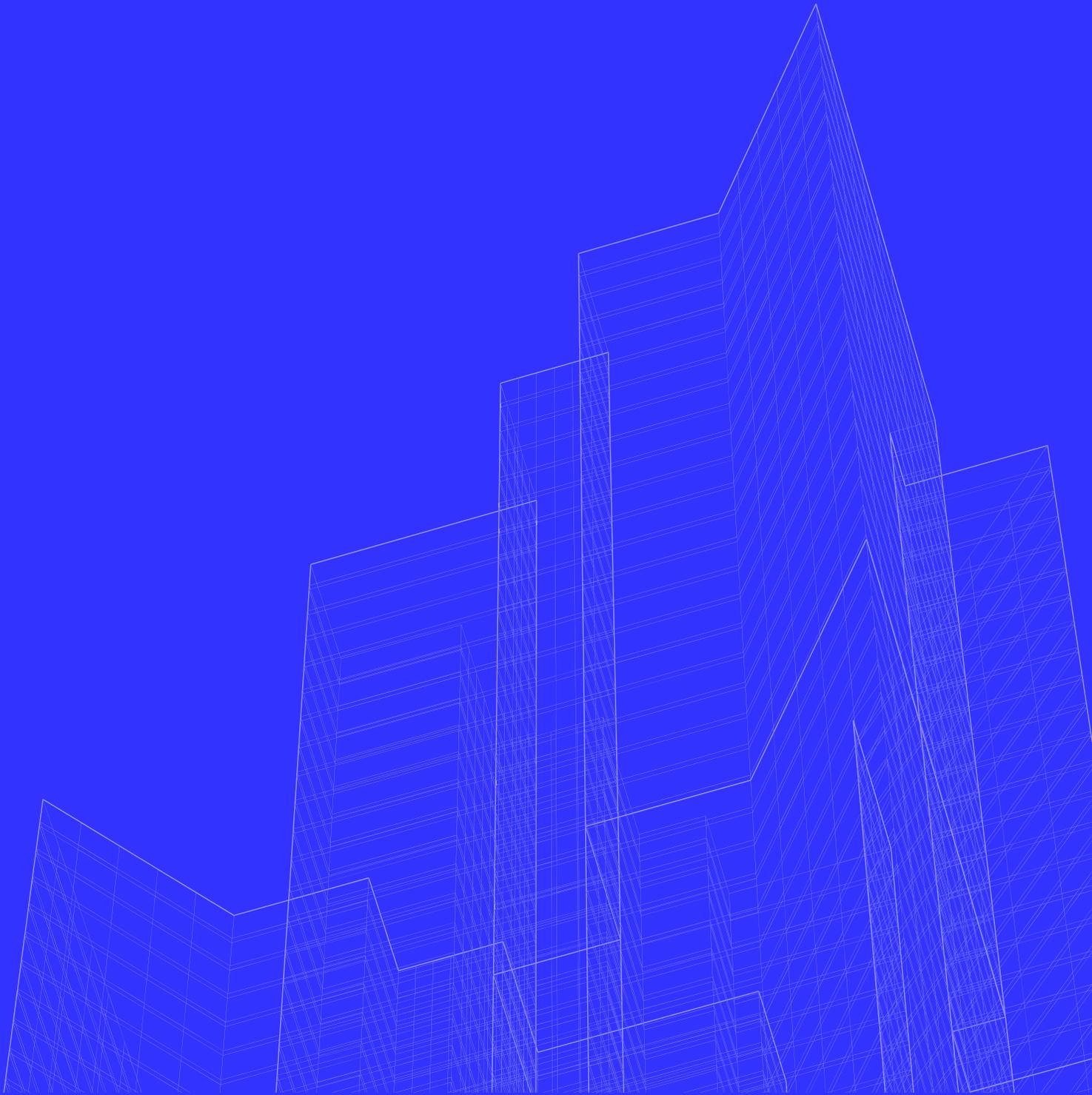
<표 I-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방식

전혀 (없다 응답수	× 100 +	별로 없다 응답수	× 75 +	보통 응답수	× 50 +	다소 있다 응답수	× 25 +	매우 많다 응답수	× 0) /	전체 응답수	=
------------------	---------	-----------------	--------	-----------	--------	-----------------	--------	-----------------	--------	-----------	---

2022 통계보고서

II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제2장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 유형과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으로 함. 조사대상은 2016년 최초 조사 당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였음.

-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기술자료 제공금지 사항은 건설하도급과 관련이 많지 않아 제외하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조항 외에 하도급업체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 즉 부당특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원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일반적으로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이의제기 또는 클레임에 따른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조사에서 보복조치 금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2018. 1. 17 개정)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3배 손해배상

- 당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유용(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2011. 6. 30. 시행)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2013. 11. 29. 시행). 이후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음(2018. 7. 17. 시행).
- 기술유용은 건설공사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지 않아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음.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항,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제1항·제2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4항 및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부당특약

- 원·하도급 당사자 간 합의를 명분으로 삼아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특약의 형태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음. 그러나 특약은 그 부당성에 불구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당사자 간 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 14일자로 시행함(하도급법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도급업체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함께 도입하였음.
-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하도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이행하고 원도급업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함. 하도급업체에게 있어서 공사수행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능성, 지급되리라는 예측은 하도급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반화된다면 시장거래의 계속성이 위협받고 신뢰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함.
-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의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됨. 특히 건설업 특성 상 일용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6조).

-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종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하도급법(2018. 1. 16.)에서는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이외 항목의 가격변동으로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확대하였음(2018.7.17. 시행).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적정임금제 도입과 같은 정책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8.1.16. 개정, 2018.7.17. 시행)²⁾

1.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보복금지

-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도급업체가 해당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종전에는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분쟁 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있었음. 2018년 1월 16일자 개정 법률에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도 위법행위(동조 2의2호)에 포함하여 보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음(2018.7.17. 시행).
-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음.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음.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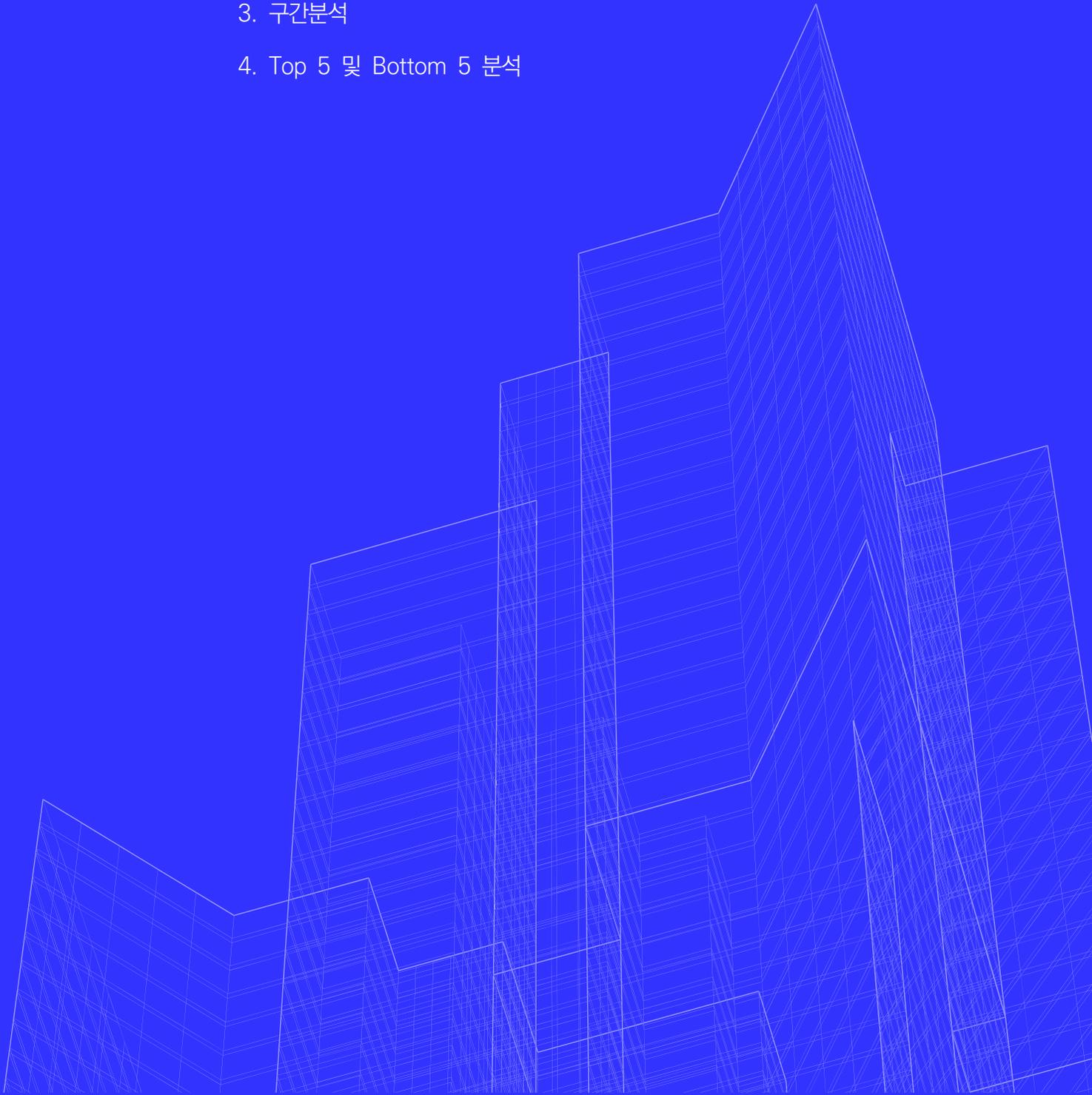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2018.1.16. 개정, 2018.7.17. 시행)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2) 2022년 1월 11일자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제1항 제3호(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사유로 신설하여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III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 체감도 평균점수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3. 구간분석
4. Top 5 및 Bottom 5 분석



제3장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1. 체감도 평균점수

- 2022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아우르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는 68.8점으로 조사되었음(〈표 III-1〉 참고).
 - 2021년 조사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에 비해 3.7점 하락한 수치임.
 - 8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개별 항목에서도 부당한 하도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7개 범주에 속하는 36개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2021년에 비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의 요인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성향을 강화하였을 것으로 보임.

〈표 III-1〉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체감도 점수	70.1	67.9	68.3	70.2	73.2	72.5	68.8
증감		-2.2	0.4	1.9	3.0	-0.7	-3.7

- 39개 항목별 체감도 점수는 〈표 III-2〉와 같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체감도 점수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이며,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절대적 기준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예를 들면 부당한 반품(5) 범주 ④번 항목(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을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은 76.5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하도급대금 지급(6) 범주 ③번 항목(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은 61.4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표 III-2〉 항목별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2022	증감	2021	증감	2020	증감	2019	증감	2018	증감	2017
1.부당 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2	↑	67.7	↑	61.0	-	61.0	↑	60.1	↓	60.6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6.4	↓	68.4	↑	66.1	↑	59.7	↑	57.5	↑	55.3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6	↑	67.0	↓	67.7	↑	60.6	↑	59.59	↓	59.60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1	↓	71.2	↓	71.6	↑	67.1	↑	64.5	↑	63.7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9	↓	68.0	↓	70.9	↑	65.8	↑	63.2	↑	63.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 부담 약정	62.4	↓	63.9	↓	65.2	↑	57.5	↑	55.7	↓	56.5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3	↓	71.3	↓	71.8	↑	68.3	↑	65.4	↑	65.3
	⑧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7.0	↓	68.4	↓	73.2	↑	66.3	↑	63.6	↓	65.4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66.5	↑	65.8	↓	67.3	↑	62.1	↑	59.9	↓	62.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	64.6	↓	67.1	↑	60.5	↑	58.0	↓	60.7
2.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6.6	↓	68.2	↓	71.1	↑	66.3	↑	63.0	↓	64.9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7.0	↓	70.2	↓	70.4	↑	66.7	↑	65.2	↓	65.9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0.8	↓	73.2	↓	76.8	↑	73.2	↑	71.8	↓	72.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9.5	↓	75.4	↑	73.6	↑	69.4	↑	68.7	↑	67.7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4.6	↓	65.9	↓	66.5	↑	63.0	↑	62.2	↑	60.6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9	↓	72.7	↑	72.5	↑	69.2	↑	68.3	↑	65.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7	↓	71.2	↑	70.0	↑	67.3	↑	66.3	↑	65.7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0	↓	75.1	↑	74.3	↑	70.6	↑	70.5	↑	68.0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3.7	↓	78.2	↓	79.9	↓	81.0	↑	80.2	↑	79.0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3.1	↓	78.7	↓	80.2	↓	80.3	↑	77.4	↑	77.1
4.부당 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69.8	↓	73.5	↓	75.7	↑	73.7	↑	72.1	↑	70.8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1.2	↓	75.6	↓	76.1	↑	75.5	↑	72.9	↑	72.6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2.4	↓	80.0	↓	80.3	↓	80.6	↑	78.3	↑	75.2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1.5	↓	78.1	↑	77.5	↑	77.2	↑	75.3	↑	75.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 대금 공제	72.6	↓	78.8	↓	79.4	↑	78.4	↑	75.5	↑	75.1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	79.8	↓	80.9	↑	80.1	↑	79.7	↑	76.3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3.2	↓	79.4	↓	79.8	↑	78.8	↑	78.7	↑	75.2
5.부당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	81.0	↓	83.4	↓	83.6	↑	82.1	↑	79.9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	80.1	↓	81.7	↓	83.2	↑	80.6	↑	79.2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5.1	↓	81.4	↓	82.7	↓	83.6	↑	80.5	↑	78.6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6.5	↓	81.6	↓	82.1	↑	81.6	↑	79.3	↑	76.9
6.하도급 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5.3	↓	73.2	↑	71.8	↑	67.7	↓	69.2	↓	70.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	66.3	↑	65.8	↑	61.5	↓	62.9	↑	61.5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	64.1	↓	64.2	↑	60.1	↑	58.7	↓	60.5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8.1	↓	73.7	↓	74.3	↑	70.6	↑	69.8	↑	68.9
7.하도급 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	66.4	↓	68.3	↑	64.0	↑	58.7	↓	61.6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4.2	↓	66.0	↓	69.0	↑	64.1	↑	58.8	↓	62.4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4.2	↓	65.9	↓	67.8	↑	61.4	↑	57.6	↓	60.5
8.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0.5	↓	76.5	↓	76.6	↑	75.0	↑	73.2		

2. 범주별 체감도 점수

□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표 III-3>과 같음.

<표 III-3> 범주별 체감도 점수

범주	1. 부당 특약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4. 부당감액	5. 부당한 반품	6. 하도급 대금 지급	7. 하도급 대금 조정	8. 보복 조치 금지
2022	⑥66.8	⑤68.1	②73.4	③72.1	①75.2	⑦64.4	⑧63.9	④70.5
2021	⑦67.6	⑤71.5	②78.4	③77.9	①81.0	⑥69.3	⑧66.1	④76.5
2020	⑧68.2	⑤71.9	②80.1	③78.5	①82.5	⑥69.0	⑦68.4	④76.6
2019	⑧62.9	⑤68.2	②80.7	③77.7	①83.0	⑥65.0	⑦63.2	④75.0
2018	⑦60.8	⑤67.0	②78.8	③76.1	①80.6	⑥65.1	⑧58.4	④73.2
2017	⑦61.2	④66.3	②78.0	③74.4	①78.6	⑤65.3	⑥61.5	-
2016	⑤61.4	④66.4	②79.5	③77.0	①80.7	-	-	-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한 반품(5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5.2점으로 가장 높음(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와 같은 순위). 다만, 2021년도에 비해 체감도 점수는 5.8점 하락하였음.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3범주) 73.4점, 부당감액(4범주) 72.1점, 보복조치 금지(8범주) 70.5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범주) 68.1점, 부당특약(1범주) 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 범주) 64.4점, 하도급대금 조정(7 범주) 63.9점의 순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음.

- 1순위: 부당한 반품(75.2점)
- 2순위: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 3순위: 부당감액(72.1점)
- 4순위: 보복조치 금지(70.5점)
- 5순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 6순위: 부당특약(66.8점)
- 7순위: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 8순위: 하도급대금 조정(63.9점)

- 1순위(부당반품)에 이어 2순위(부당한 위탁취소)와 3순위(부당감액), 4순위(보복조치 금지)도 2021년 조사와 범주별 순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최하위로 나타났음. 2022년 체감도 점수는 63.9점으로 2021년의 66.1점에 비해 2.2점 하락하였음.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2021년 6위에서 2022년에는 7위로 하락하였음. 체감도 점수는 2020년 69.0점, 2021년 69.3점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64.4점으로 4.9점 하락하였음.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와 함께 가장 하위권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한 감액(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4가지 범주는 68.8점 이상에 해당함. 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 등 4가지 범주는 전체 체감도 점수 68.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범주와 부당특약 범주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아 하도급대금 및 부당특약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범주의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III-4>와 같음.

<표 III-4>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3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2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9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6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7.0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6.5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6.4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⑥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2.4

- 부당특약 금지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6.8점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보다 낮음.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6순위에 해당함.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70.1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2.4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당특약 관련 항목에서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III-5>와 같음.

〈표 III-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0.8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0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9.5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9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7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7.0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6.6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4.6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8.1점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보다 낮음.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5순위에 해당함. 체감도 점수가 2021년(71.5점) 대비 3.4점 하락.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70.8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64.6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와 동일).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 68.8점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로 나타났음.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64.6점) 항목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항목과 관련되는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표 III-6〉과 같음.

〈표 III-6〉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3.7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3.1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3.4점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보다 높음. 2021년(78.5점) 대비 체감도 점수가 5.1점 하락함.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2순위에 해당함.
-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73.7점) 항목,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는 지연(73.1점) 항목의 순이며, 두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공사에서 목적물 수령거부나 계약취소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범주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7>과 같음.

<표 III-7>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3.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2.6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2.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1.5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1.2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69.8

- 부당감액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2.1점임.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높음. 2021년(77.9점)에 대비하여 5.8점 하락함.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3순위에 해당함.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74.1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69.8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21년과 최하위 항목이 같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7개 항목 모두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체감도 점수 68.8점보다 높음.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8>과 같음.

<표 III-8>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6.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5.1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5.2점임.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사에서도 1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 보다 높으나, 2021년(81.0점)에 비해서는 5.8점 하락함(2021년 81.0점).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76.5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음.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74.2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부당반품에 속하는 4개 항목 모두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높은 70점대 중반으로 조사되어 부당반품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품질문제를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반품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9>와 같음.

<표 III-9> 하도급대금 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8.1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5.3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4.4점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낮음.
-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7순위에 해당함.
-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68.1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1.4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4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낮게 나타남.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하도급대금 지급 법정 기일(15일) 또는 계약문서 상의 하도급대금 약정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 19 사태, 자재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중소 건설업체 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 가계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하도급대금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서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4.22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4.19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63.9점임.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낮음. 체감도 점수가 조사대상 8개 범주 중 8순위로 최하위에 해당함.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64.22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63.2점)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3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조정된 계약금액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통보 또는 조정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공사는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물가변동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도급업체가 변경된 내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2021년에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았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아졌음. 2021년 66.4점에서 2022년 63.2점으로 3.2점 하락하였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주어야 할 하도급대금 증액 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표 III-11>과 같음.

<표 III-11>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0.5

- 보복조치 금지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70.5점으로 나타났음. 1개 항목으로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포괄함. 전체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70점을 갖는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도급업체의 보복조치는 대체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표 III-12>는 조사대상 8개 범주별로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III-4>에서 <표 III-11>까지를 종합한 것임.

<표 III-12>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부당특약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3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8.2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9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7.6
	⑧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7.0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6.5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6.4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⑥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2.4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0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9.5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9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7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7.0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6.6
3. 부당한 위탁취소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4.6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3.7
4. 부당감액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3.1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3.2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2.6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2.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1.5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1.2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69.8
5. 부당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6.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5.1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6. 하도급대금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8.1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5.3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7. 하도급대금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4.2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4.2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0.5

3. 구간분석

□ <표 III-13>은 조사대상 8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를 5점 구간에 맞추어 분포현황을 나타낸 것임. 구간별 분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8개 범주별로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II-13>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범주	항목	점수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1.부당특약	①	68.2							
	②	66.4							
	③	67.6							
	④	70.1							
	⑤	67.9							
	⑥	62.4							
	⑦	69.3							
	⑧	67.0							
	⑨	66.5							
	⑩	62.5							
2.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①	66.6							
	②	67.0							
	③	70.8							
	④	69.5							
	⑤	64.6							
	⑥	68.9							
	⑦	67.7							
	⑧	70.0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73.7							
	②	73.1							
4.부당감액	①	69.8							
	②	71.2							
	③	72.4							
	④	71.5							
	⑤	72.6							
	⑥	74.1							
	⑦	73.2							
5.부당반품	①	74.9							
	②	74.2							
	③	75.1							
	④	76.5							
6.하도급대금 지급	①	65.3							
	②	62.8							
	③	61.4							
	④	68.1							
7.하도급대금 조정	①	63.2							
	②	64.2							
	③	64.2							
8.보복조치 금지	①	70.5							

-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대부분(13개중 12개) 71점 이상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모든 항목이 70점 이하의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7개중 9개) 항목의 점수대가 낮음(65점 이하).
-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음. 2020년, 2021년 조사에 이어 3년 연속으로 60점 이하 점수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음. 2019년에는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이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4개, 하도급대금 지급에 속하는 항목 1개로 모두 5개였음.
- 61점 이상에서 70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항목은 27개로서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 중 69.2%가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0개(10개 중 10개, 100%),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8개(8개 중 8개, 100%), 부당한 감액에 속하는 항목 1개(7개 중 1개, 14.3%), 하도급대금지급에 속하는 항목이 4개(4개 중 4개, 100%), 하도급대금 조정에 속하는 항목이 3개(3개 중 3개, 100%), 보복조치 금지에 속하는 항목이 1개(1개중 1개, 100%)로 나타났음. 부당특약,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금지 관련 항목의 점수대가 낮음.
- 71점 이상에서 8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은 12개(30.8%)인데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2개 중 2개, 100%),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6개(7개 중 6개, 85.7%),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4개 중 4개, 100%)로 나타났음.
-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음.

4. Top 5 및 Bottom 5 분석

□ <표 III-14>는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 순으로 배열한 결과로서,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를 파악할 수 있음.

<표 III-14> 항목별 체감도 점수 순서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6.5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5.1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4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3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73.7
4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73.2
3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3.1
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2.6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2.4
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1.5
4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1.2

〈표 III-14〉 항목별 체감도 점수 순서(계속)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0.8
8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0.5
1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70.1
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0
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69.8
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9.5
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9.3
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9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8.2
6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용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8.1
1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9
2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7.7
1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7.6
1	⑧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7.0
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7.0
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6.6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6.5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6.4
6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5.3
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4.6
7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64.2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4.2
7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6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1	⑥	제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2.4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하위권에 포진하고 있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항목,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5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Top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III-15〉와 같음.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76.5점)’ 항목임. 상위 2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75.1점)’ 항목임. 상위 3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74.9점) 항목임. 상위 4순위는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74.2점) 항목임. 상위 5순위는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74.1점) 항목임.

〈표 III-15〉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³⁾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6.5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75.1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74.9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74.2
4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4.1

주) 범주4는 부당감액, 범주5는 부당반품.

- 부당반품 범주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순위가 양호함.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상위 1순위(5-④), 상위 2순위(5-③), 상위 3순위(5-①), 상위 4순위(5-②)에 해당함.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 5순위(4-⑥)에 위치함. 상위 1위, 2위, 3위, 4위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도 Top5에 포함되었고 순위가 동일함.

□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Bottom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III-16〉과 같음.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순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1.4점) 항목임. 하위 2순위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2.4점) 항목임. 하위

3) 2020년 및 2021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상위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3.4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2.7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2.1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1.7
4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80.9

〈2021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81.6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1.4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1.0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1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80.0

3순위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62.5점)’ 항목임. 하위 4순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62.8점)’ 항목임. 하위 5순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63.2점)’ 항목임. 하위 1순위(6-③), 2순위(1-⑥), 3순위(1-⑩)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도 Bottom 5 포함되었음.

〈표 III-16〉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⁴⁾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7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63.2
6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8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2.5
1	⑥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2.4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1.4

주) 범주1은 부당특약, 범주6은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7은 하도급대금 조정

- 하도급대금 관련 항목이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음. 하위 1순위(6-③), 하위 4순위(6-②)는 ‘하도급대금 지급’, 하위 5순위(7-①)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하위 2순위(1-⑥), 하위 3순위(1-⑩)는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으로, 하위 5순위 안에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 포함되어 있음. 범주별 체감도 점수를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64.4점) 및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63.9점) 보다 부당특약 범주의 체감도 점수(66.8점)가 다소 높지만 하위 5순위 안에 있는 개별 항목의 분포를 보면 부당특약이 불공정거래의 주요한 유형으로서 관심이 필요함.

4) 2020년 및 2021년 공정거래 체감도 하위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1.0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2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2
6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5.8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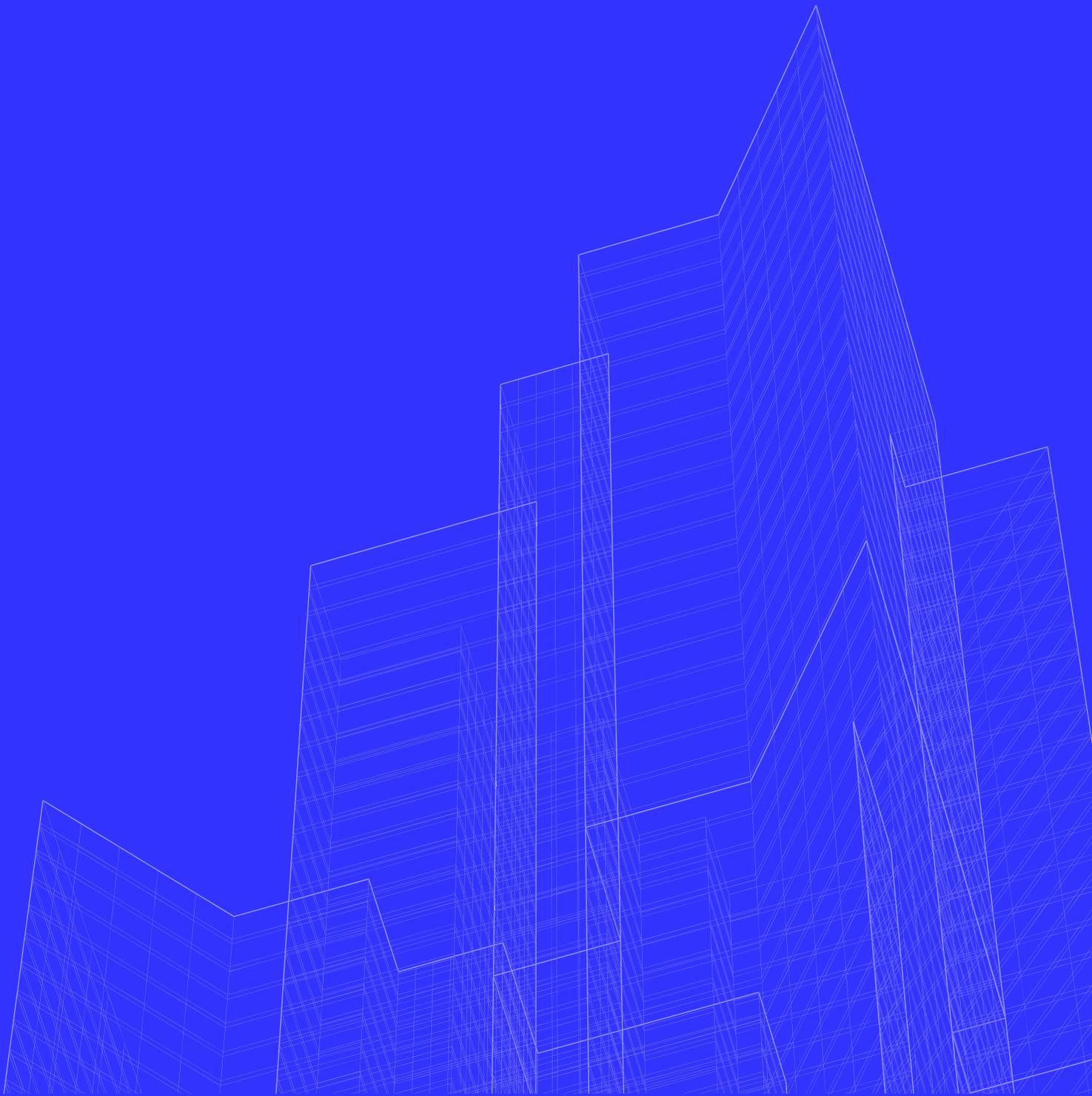
〈2021년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9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64.1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64.6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65.8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65.9

2022 통계보고서

IV

종합



제4장

총 합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거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7,437개사 중 계통추출법에 의하여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431부(8.6%)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4.67임.
 - 설문지는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항목은 <표 I-2>, 설문지는 부록 참고).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낮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22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8.8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1년 체감도 평균점수 72.5점보다 3.7점 하락하였고, 체감도 점수 만점이 100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공정거래 수준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전반적 추세로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연속 체감도 평균점수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과 2022년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체감도 평균점수 하락폭이 큼.
 -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등의 부정적 요인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성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2022년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달러강세 등에 따른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향후 체감도 조사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조사대상 8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정렬하면 하도급대금 조정(63.9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부당특약(66.8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부당한 감액(72.1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한 반품(75.2점) 범주 순서임(<표 III-3> 참고).
 -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조정·지급)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평균점수 68.8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범주의 불공정거래 상황이 평균적인 상황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63.9점)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고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낮으며 하위 4개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부당특약(66.8점) 범주의 항목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한 제한이나 비용전가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낮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75.2점으로 8개 범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건설생산에서 발주자가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다른 범주에 비해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구간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및 부당특약 관련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모두가 70점 이하에 분포하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표 III-13〉 참고).

- 조사대상 8개 범주별로 체감도 점수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 보면,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10개 항목 모두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부당특약 범주는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항목의 분포 비중이 100%임. 하도급대금 결정(8개 항목 중 8개),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4개),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 범주 또한 체감도 점수 70점 이하 항목의 비중이 100%임.
- 부당반품(4개 중 4개 71점 이상), 부당한 위탁취소(2개 중 2개 71점 이상), 부당한 감액(7개 중 6개 71점 이상), 보복조치 금지(1개 중 1개 71점 이상) 범주에 속하는 항목 14개 중 13개 (92.9%)는 71점 이상에 해당함.

□ Top 5 및 Bottom 5 분석 결과,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불공정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Bottom 5는 39개 전체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배열하여 최하위 5개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부당특약 범주 2개 항목,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 2개 항목, 하도급대금 조정 1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하위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60 점대에 불과함(최저 61.4, 최고 63.2). Bottom 5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6-③, 61.4점), ② 재작업·추가 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1-⑥, 62.4점), ③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1-⑩, 62.5점), ④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6-②, 62.8점), 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7-①, 63.2점).

- Top 5는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여 최상위 5개를 선정한 것임. Top 5에 포함된 항목은 체감도 점수가 74점 이상으로(최고 76.5, 최저 74.1) 조사되었음. Top 5 항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5-④, 76.5점), ②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5-③, 75.1점), ③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5-①, 74.9점), ④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5-②, 74.2점), ⑤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4-⑥, 74.1점).

□ 2022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나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와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결정, 조정 및 지급 범주의 모든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60점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 하도급업체의 경영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도급업체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음.
-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특히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원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조정되는 경우에 변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계약을 맺는 궁극적 목적이 됨. 따라서 적정 수준의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원도급계약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하도급대금 조정은 하도급계약 이행의 핵심적인 요소가 됨. 정책 당국은 발주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현장근로자로 이어지는 하도급 대금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주체로서 하도급대금의 결정, 지급 및 조정은 현장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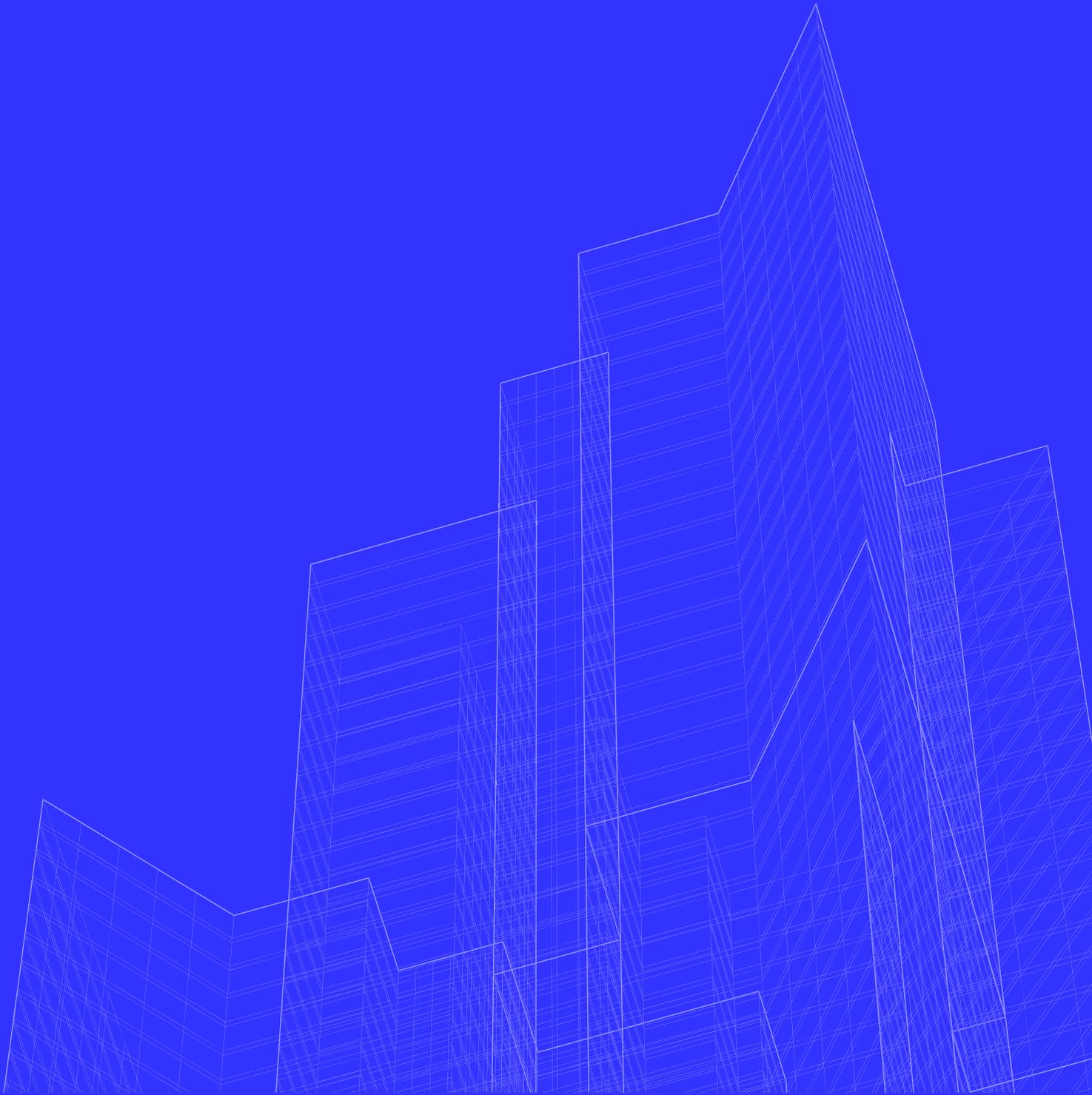
참고문헌

대한전문건설협회(2022),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분석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202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부록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설문지



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21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 조사거래: **2021년** 1년 동안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
- ▲ 조시시점: 2022년 5월 23일 - 6월 10일
-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익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적절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따로 약정한 기일이 없으면 최대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현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제외)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수급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a·b·c·d)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a.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 b.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c.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 d.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					